유사디자인제도의 활용 및 문제점

김 웅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목 특허법인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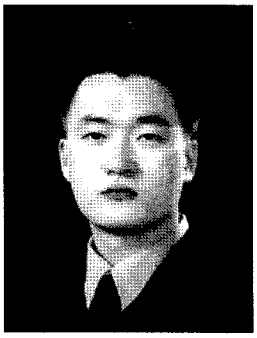

I. 서설

유사디자인제도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7조제1항 참고) 즉,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사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수많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고,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치지만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리 유사범위 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모호한 권리의 범위를 현재화함으로써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 시 구제를 신속히 하여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자기의 출원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선출원주의 또는 신규성의 예외에 해당한다. 즉, 자기의 선출원디자인(기본디자인)과 관련하여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지 아니하며, 자기의 선출원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기본디자인)과 관련하여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지 않는다.

II. 유사디자인제도의 취지 및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논의

1. 문제점

유사디자인제도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을 전제로 하여 그 유사범위에 포함되는 수많은 디자인 중 하나를 특정하여 등록받는 제도이다. 이 경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일반적인 디자인권과 동일하게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가 미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결국 유사디자인제도의 궁극적인 취지 및 유사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논의라고 할 것이다.

2. 견해의 대립

(1) 확인설

유사디자인제도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 즉,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요건의 판단 시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한지 여부만 판단하며, 등록 후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2) 확장설

유사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의 폭을 더 넓은 범위까지 인정받기 위한 제도로 보고, 그 등록요건의 판단 시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며, 등록 후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의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확장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결과확장설

확장설과 그 취지는 같으나, 유사디자인의 유사의 폭까지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인정하되 이것은 기본디자인의 권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사디자인 독자의 권리범위의 폭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유사디자인의 독립적인 등록요건도 판단한다고 본다.

3. 판례의 태도

(1)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가)호 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94후1749)

(2)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 디자인과 을 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유사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 디자인과 그 유사디자인 및 을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89후25)

(3)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2004후1748)

(4) 상기 판례에 의하면 유사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확인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가호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시 등록된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4. 검토

제7조제1항에 의하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즉, 유사디자인은 반드시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라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법규정상 유사디자인등록출원시에 독자적으로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 등의 등록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 한편, 제42조에 의하면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 따라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기본디자인과는 비유사하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도 이와 같다. 결국, 법규정 및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에 의하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결과확장설적인 입장에서 심사받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후에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 내에서만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확인설적 입장으로 보호받는 것이 되어 출원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서, 별도의 입법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 및 별도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상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기본디자인에 종속적인 성격을 갖지만, 독자적인 등록요건의 판단이 요구되며,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출원 시 법적취급

출원서는 출원서의 일반적인 기재방식을 따라야 한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무심사등록출원인지 여부,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지 여부,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여부, 기본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 한편,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 물품 및 유사물품이다. 즉, 반드시 동일물품에 대한 명칭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유사디자인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이 정당할 경우 유사디자인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일치되도록 하고, 유사디자인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비해 보다 정당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V.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요건

1.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제7조)

(1) 주체의 동일성(제7조제1항)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인과 기본디자인의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2) 기본디자인이 존재할 것(제7조제1항)

기본디자인이라 함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말하며, 기본디자인이 취하, 포기, 무효 등이 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3)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할 것(제7조제1항)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선출원디자인 또는 선공지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나,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자기의 선행디자인에 유사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하다 함은 상호간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가 유사한 경우, 물품이 유사하고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4) 출원 또는 등록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 것(제7조제2항)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는 비유사한 단독디자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이를 인정하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합체되는 결과가 되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사기준에 의하면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단독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게 하여 등록하고,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된 후에 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에 의해 공지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 유사한 것으로 하여 거절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된 후에 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에 의해 공지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 유사한 것으로 하여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록에 의한 공지일부터 6월 이내에 자기의 유사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제8조의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등록에 의한 공지를 의사에 의한 공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사견으로는 제8조제1항의 법규정상 공지 등이 된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점, 출원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2007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신설된 제18조제3항의 입법 취지상 상기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출원에 있어서(보정시에도 이와 같다) 신규성의제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기타의 등록요건 여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의 예외이므로 기타 등록요건은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과 같이 모두 만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2.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1) 제26조제1항제5호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신속한 심사를 통해 빠른 권리화를 위함이다. 즉,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제26조제1항제5호는 기본적으로 제7조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마목에 의하면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디자인 "에만"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한 제7조제1항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과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선행디자인의 검색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무심사등록출원의 신속한 권리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고(제11조의2제3항),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제11조의2제4항) 이는 심사절차상 편의를 위함이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i) 1개의 기본디자인과 이에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ii) 2개이상의 기본디자인과 각각 이에 유사한 여러 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iii)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인 1개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iv)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중이 2개 이상의 기본디자인에 각각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v)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하나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수개의 유사디자인과 별개의 단독디자인을 함께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다.

(3)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제26조제3항)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 의하면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제7조의 요건을 심사할 수 있다.

V. 절차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 의하면 단독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경우(그역의 경우도 같다) 출원형식을 변경하는 보정절차만으로 흠결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제2항) 예를 들어,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디자인등록출원은 한 경우(제7조제1항 위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제7조제2항 위반)에는 보정에 의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한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시 제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제3항)

VI. 유사디자인 등록요건의 흠결 시 효과

1.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제7조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고, 제7조제1항 위반인 경우에만 무효사유에 해당한다.(제7조제2항 위반의 경우 출원형식의 하자만 있는 것이므로 등록 후에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일반적인 등록요건의 위반시 효과는 해당 규정에 의한다.

2.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고, 제7조제1항 위반인 경우에만 무심사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제7조제2항 위반의 경우 출원형식의 하자만 있는 것이므로 등록 후에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도 제7조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제26조제3항) 한편, 일반적인 등록요건의 위반시 효과는 해당 규정에 의한다.

3. 심사보류 여부

무효심판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여부결정을 하도록 하나, 기본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68조제4항 참고)

VII. 유사디자인 등록의 효과

1. 권리의 종속적 지위(실질적 지위)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제42조)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로 한다.(제40조제1항단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제46조제1항단서) 한편,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제23조의4제1항)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한다.(제68조제4항) 단독으로 유사디자인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기본디자인권의 질권은 유사디자인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기본디자인의 실시권은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권리의 독립적 지위(절차적 지위)

유사디자인권은 독자적인 무효심결확정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제68조제5항) 유사디자인권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유사디자인권에 대해서 단독의 포기가 가능하다. 유사디자인권에 대해서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VIII. 관련문제

1. 유사디자인등록출원과 신규성의제주장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등록출원하고,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도 신규성의제주장(제8조)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현행법의 해석상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기본디자인등록출원과는 별개의 출원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디자인과는 별개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시 별도의 신규성의제주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제7조제1항 참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유사디자인등록출원시점이 단축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상 신규성의제주장이 불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본디자인의 선택의 문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서에 기본디자인은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디자인등록출원할 디자인이 자기의 2이상의 기본디자인과 각각 모두 유사한 경우 어떤 것을 기본디자인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1990년 이전 구 의장법은 "유사디자인의 의장권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권과 합체한다"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최초의 출원을 기본디자인으로 해야 했지만 현행법상 제42조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된다. 가장 먼저 출원(또는 등록)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어느 쪽이건 가장 많이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

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어느 쪽을 기본디자인으로 할 것인가는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생각건대, 유사디자인제도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의 예외라는 사실로 보았을 때는 최초로 출원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함이 타당하다.

3.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할 것"의 의미

(1) 타인의 선행디자인과의 관계

1)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
자기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하기만 하면 모두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기본디자인출원 전후를 불문하고 타인의 선행디자인에 유사하더라도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기만 하면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확인설적 입장)

2) 기본디자인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출원 전의 타인의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기본디자인출원 후의 타인의 선행디자인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확인설적 입장에서 파생된 견해)

3) 기본디자인과 타인의 선행디자인과의 선택적 입장
유사디자인출원된 것이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비교할 때 기본디자인에 더 유사하면 유사디자인등록이 가능하고, 반대로 타인의 선행디자인에 더 유사하면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4) 유사디자인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
(심사기준의 태도)
유사디자인등록출원 전의 타인의 선행디자인에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견해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신규성이나 선출원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입장이다. (결과확장설적 입장) 현행 심사기준의 입장이며 현행 심사실무는 유사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유사디자인출원시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모두 판단하고 있다.

(2) 자기의 공지디자인과의 관계

1) 기본디자인출원 후 유사디자인출원 전 자기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심사기준에 의하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해석상 동일도 포함)한 자기의 선행디자인에 유사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에는 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유사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2) 기본디자인출원 전 자기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일단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경우 자기의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유사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4. 유사디자인권만의 단독의 질권 설정 문제

질권이 설정되어 경락되더라도 분리이전 금지규정에 의해 주체가 변경되지 못하므로 질권 설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부정설, 질권설정에 대한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고 경락이 되면 합의에 의해 기본디자인과 함께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의 질권설정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긍정설이 대립되나 유사디자인권의 합체규정 및 종속적인 성격을 감안한다면 부정설이 타당하다.(제46조제1항단서 참고)

5. 유사디자인과 관련된 정정제도의 도입론

(1) 첫 번째 문제되는 사안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착오등록되는 경우 원래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리하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게 된다.(42조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7조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두 번째 문제되는 사안

기본디자인권이 신규성 상실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인용디자인과 비유사한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할 수 밖에 없다.(제68조제4항 참고) 그러나 소멸할 수 밖에 없는 유사디자인권은 인용디자인과 비유사하기 때문에 단독디자인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해결론(정정심판 도입론)

상기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 유사디자인등록을 단독디자인등록으로 변경하는 정정이 가능하다면 상기와 같은 불합리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제18조제2항 참고) 정정심판은 권리범위가 주로 문자에 의해 정해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권리범위가 주로 도면에 의해 정해지는 디자인보호법에는 도입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등록형식에 관한 하자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정심판(정정청구 포함)을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6. 유사디자인등록출원과 우선권주장

기본디자인이 유사디자인보다 선원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만 우선권주장을 하여 판단시점의 소급으로 인해 기본디자인출원일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유사디자인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다.

7.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입법론

유사디자인제도의 일부 불합리성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일본법상 관련디자인제도를 참고한다. 관련디자인제도란 유사한 디자인이 동일인의 출원에 의해 동일자로 출원된 경우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된 디자인을 본디자인, 이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라 하며, 관련디자인은 본디자인의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나, 그 외의 사유에 의한 본디자인 소멸로는 종속되어 소멸하지 않고 본디자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IX. 결어

디자인의 유사범위는 추상적인 범위이므로 유사디자인제도를 활용하면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등록요건의 판단과 권리범위 인정 여부 간에 문제점이 없진 않지만 협소한 디자인의 권리범위의 충실한 보호를 위한 유익한 제도임은 분명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유사범위를 인정하게 되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함에 있어서 많은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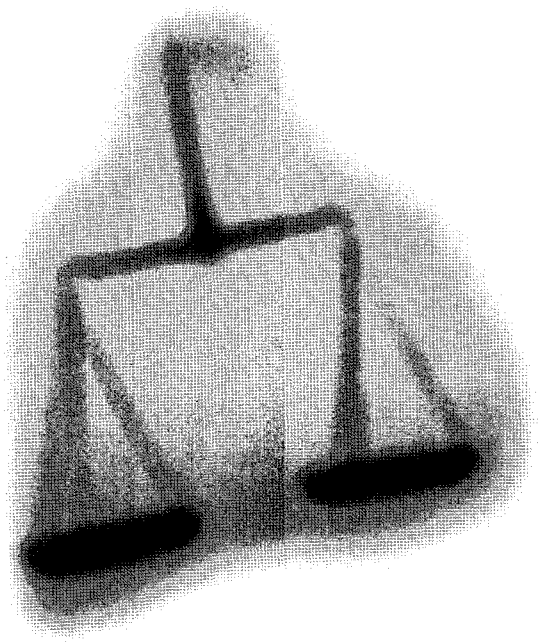
발명특허 2009. 7